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6. 5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6. 25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3. 6. 26
- 라. 상정일자 : 2003. 7. 5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가. 개정이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의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용자 조건 완화 등 주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분야와 생활안정기금분야로 구분 운용·관리하도록 함.
 -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성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함(법 제20조, 영 제28조 내지 제35조)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안 제8조제3항)

-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시에는 현행과 같이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안 제9조)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 등(안 제10조제3항)

-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95년 조례제정 당시 고금리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율 적용을 현행 시중 변동율 적용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함.
- 대출금리 현행 3% ⇒ 1%로 인하, 연체이자율 현행 10% ⇒ 4%로 하향적용

○ 용자금 회수 등(안 제11조)

- 용자금 대여자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읍·면·동 관리 조항을 신설함.

1.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할 때
2. 용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등 사회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각각 운영되어 오던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운용하려는 사항임.
- 유사한 설치목적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별도 제정 운용하던 사항 등은 금년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서도 통합관리기금조례의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안과 같이 통합하여 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59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03. 7. . (재 회)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3년 6월 25일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
----------	----

제출년월일 : 2003. 6. 25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의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용자 조건 완화 등 주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분야와 생활안정기금분야로 구분 운용·관리하도록 함.
-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성된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함 (법 제20조, 영 제28조 내지 제35조)

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안 제8조제3항)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연 5퍼센트에서 연3퍼센트로 하향 적용하고, 연체시에는 현행과 같이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안 제9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생활안정기금 용자금액 등(안 제10조제3항)

-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95년 조례제정 당시 고금리 대출 이자 및 연체이자율 적용을 현행 시중 변동율 적용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함.
- 대출금리 현행 3% ⇒ 1%로 인하, 연체이자율 현행 10% ⇒ 4%로 하향적용

※ IMF이후 시중대출금리 및 연체율 현황

구 분	'95년도	2003 현재	증 감	비 고
시중대출금리	12 %	9.5 %	△ 2.5 %	
시중연체이자	18 %	12 %	△ 6 %	

바. 용자금 회수 등(안 제11조)

용자금 대여자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읍·면·동 관리 조항을 신설함.

1.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할 때
2. 용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사. 기금관리공무원 등(안 제15조제1항)

그동안 운용되어 오던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초생활 보장기금 관련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함.

-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 기금출납원 : 사회담당

아.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기금설치 목적 및 이용대상자가 유사한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합 정비함.

자. 일반적인 경과조치(부칙 제3조)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자산은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이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33조제1항 내지 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20조, 제4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28조제1항, 제36조, 제4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나. 입법예고 결과의견: 없음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등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
3. 서산시의 출연금 또는 서산시 이외의 자치단체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7.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와 생활안정기금분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차액 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생활안정기금분야의 용자대상은 재난 기타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 중 자활의욕이 강하고 용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4. 영농 및 축산자금
5.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의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기금 용자 금액 등) ①기금의 용자액은 1세대 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용자금 회수 등) ①읍·면·동장은 제10조의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용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할 때
2.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②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환통지서를 발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감면조치)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담당

②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자산은 이 기금에 이관한다.